



PL2

학점 취득 방법

1 평가인정 학습과목

수업환경(시설·강사조건·운영실적 등)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 승인받은 기관(대학부설평생교육원, 직업전문학교, 학원,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)에서 개설한 과목

+ 학점인정기준

-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, 출석률 80%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하여 인정함.
-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, 전공선택, 교양,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인정됨.
- 1년/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제한 학점 적용 : 1년 42학점 / 1학기 24학점 (학기의 기준 - 1학기: 3/1 ~ 8/31, 2학기: 9/1 ~ 다음해 2/28)
 - ※ 학위취득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기준 (1학기: 3/1 ~ 7/15, 2학기: 9/1 ~ 다음해 1/15)
 - ※ 학기 적용 기준은 종강일 기준임.
-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적용됨. : 학사 105학점, 전문학사 60학점

+ 이수방법

- 수업일정, 수강비용 등의 운영 제반사항은 각 교육기관으로 문의해야 함.
- 교육기관 검색 방법 :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상단 - 교육기관 정보 - 교육기관 검색(전공, 지역, 과목별 검색 가능)

2 학점인정 대상학교

- ❖ 의미 : 학점인정 대상학교(전적대학)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으로, 학점인정 대상학교 중퇴 혹은 졸업 시,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.
- ❖ 학점인정 대상학교 종류
 -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, 기술대학
 -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
 - 사관학교, 경찰대학 등의 학교와 학력이 인정되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

+ 학점인정기준

- 성적이 60점 또는 D-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하여 인정함(점수와 관계없이 F 과목은 불인정).
- 2년제 전문대학 제적 혹은 졸업 시 최대 80학점(3년제는 최대 120학점)까지 인정함.
- 4년제 대학 제적 시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함
 - ※ 졸업한 4년제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 불가

+ 학습구분 결정기준(학습구분 종류: 전필, 전선, 교양, 일반)

-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학교 학점부여 방식에 따라 학습구분이 결정됨.
-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학습구분이 결정됨. 단,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함.

+ 주의사항

-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 중 타학점원(평가인정 학습과목, 시간제등록,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)을 동시에 이수하거나, 학점인정 대상 학교 제적 후 같은 해(혹은 학기)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/1학기 인정 제한학점 기준이 적용됨.
-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(휴학)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음.

3 시간제 등록

고등교육법 제3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, 제57조 제2항에 따라, 대학(산업대학,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)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에게 당해 대학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

+ 학점인정기준

- 성적이 60점 또는 D-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(점수와 관계없이 F과목은 불인정).
- 1개 대학에서 학기 및 연간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됨.

[1개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]

근거조항	1개 대학 최대 이수 학점
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	학기당 12학점, 연간 24학점
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, 제57조제2항	해당대학의 매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1/2학점

학습구분 결정기준은 학점인정대상학교와 동일함.

+ 이수방법

-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, 등록인원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므로 시간제등록의 시행여부, 개설과목, 수업일정, 수강비용 등의 운영 제반 사항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함.
- 사이버대학 종합정보시스템 : www.cuinfo.net(전국 사이버대학 및 학과소개, 입학정보 안내)

* 본 자료는 2015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, 이후의 변경 사항은 홈페이지(www.cb.or.kr)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* 리플렛 PDF파일 다운로드 경로 : 홈페이지 - 알림방 - 자료실 - 간행물

* '학점은행제 필수이해' 오리엔테이션 콘텐츠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, 제도 이용 전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자격

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
 ※ '제18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(14, 4, 9시행)' : 국가기술자격 367개, 국가자격 144개, 국가공인 민간자격 95개로 총 606개 자격에 대해 학점인정 가능함.

+ 학점인정기준

- 학위종류별 자격학점인정 기준 : 학사는 최대 3개,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인정 가능함(단,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, 전문학사 모두 1개 자격만 인정)
- 전공과 연계되는 자격은 '전공필수' 학점으로,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'일반선택' 학점으로 인정됨. 일반선택 자격은 1개만 인정가능함.
-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가능함.
 ※ 동일직무 : 대부분류 - 중분류 - 직무번호가 동일한 자격

전문학사	학사	타전공 학위 (전문학사, 학사)
2개 (전공2개 또는 전공1개+비전공1개)	3개 (전공3개 또는 전공2개+비전공1개)	1개
※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		

- 전공: 전공과 연계된 자격을 의미함.
- 비전공: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을 의미함.

+ 학점인정 자격 검색 방법

- 제18차 자격학점인정 기준 고시파일 다운로드 경로 :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[알림방] - [자료실] - [자격학점인정기준 : 602번 제18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]
 ※ 자격학점인정 기준은 매해 재 고시되므로, 최근 고시된 자료를 확인해야 함.
- 홈페이지 → 제도소개 → 학점인정 대상 → '자격'에서 전공별, 자격별 검색 가능

독학학위제

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,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

+ 학점인정기준

- 시험합격 혹은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함.

단계	인정학점
교양과정인정시험(1단계)	과목당 4학점(최대 20학점 인정)
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(2단계)	과목당 5학점 (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)
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(3단계)	
학위취득종합시험(4단계)	

※ 독학학위제 전공을 달리하여 각 단계별 과목을 합격하더라도 단계별 인정 가능한 최대 학점 범위 내에서만 학점 인정됨.

- 1단계는 교양으로, 2~4단계는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(단, 1단계 과목 중 일부는 학점은행제 희망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함).
-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경우 단계별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불가함.
-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에 한하여 1년/1학기 최대 인정학점,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기준 적용됨.

+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<http://bdes.nile.or.kr>

- 독학학위제 전공분야, 단계별 응시요건, 시험일정, 시험과목 등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함.

중요무형문화재

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분야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사항에 대해, 학점은행제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함.

+ 학점인정기준

-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공필수 학점으로, 동일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할 경우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됨.
- 등급별 인정 학점

등급	인정학점	비고
보유자	140학점	고등학교 졸업(혹은 이와 동등 학력)이상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, 학점인정신청 시 140학점을 인정받아 학위요건 충족함.
전수교육 조교*	50학점	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로 선정함.
이수자	30학점	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함.
전수생	3년 이상	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간에 따라 학점 인정 ※ 단,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전수생으로 등록하고 해당 전수생에 대해문화재청에보고하거나등록장부를만들어 전수생을 관리한 경우에 한해 학점인정 가능함 (일반회원 자격으로 전수받은 경험은 학점 불인정).
	2년 이상	
	1년 이상	
	6개월 이상	

*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의해 '전수교육조교'의 명칭이 변경되었기에, 세부 인정기준은 홈페이지 참조